

제 6 장 무역구제

제 6.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산출량이 당해 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라 함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 우려라 함은 단순히 주장·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제 6.2 조 반덤핑 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1994년도 GATT 제6조 및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반덤핑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반덤핑협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반덤핑 사건에 있어 다음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마진이 가중평균 기초 하에서 설정될 때, 모든 개별적 마진은, 양의 값이든 부의 값이든, 평균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취한 경우, 그러한 결정을 취하는 당사국은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규칙을 적용한다.

제 6.3 조

상계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1994년도 GATT 제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상계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를 인하의 정지, 또는

나. 그러한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실행관세율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되고 이를 준용한다. 조사는 모든 경우에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제2항에 규정된 조사를 개시할 때, 타방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로부터 나오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8항에 규정된 보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사전에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당사국이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를 또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에 즉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4. 어떠한 조치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및 기간은 제외하고, 또는

나.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되게, 권한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고 판정하는 때, 기간이 최대 2년간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5. 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당사국은 적용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6.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어야 한다.

7.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 판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중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8.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진, 양허의 형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형태로 상호 합의된 무역자유화 보상을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서 30일 내에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국 원산지상품이 그 조치의 적용을 받는 당사국은 그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타방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다.

제 6.5 조

다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제20장(분쟁해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